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영희의원 발의]

의안번호	2232
------	------

발의일자 : 2022. 9. 6.

발 의 자 : 윤영희 의원

찬 성 자 : 이인식, 장규권 의원

1. 제안이유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관련 시책 추진을 보다 내실화하고 근로청소년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
- 나.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권리를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 다. 근로 청소년을 사용자로부터 보호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 라.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 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제8조, 제8조의2
 - (2) 「근로기준법」 제64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22. 9. 7. ~ 9.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조의3(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의식 및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의2(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의식 및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현행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 2019. 5. 9.]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030호, 2019. 5. 9.,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차별없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근로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기관,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실태조사
3.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홍보
4.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5.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상담원 양성 및 구제 체계 구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노동인권보호단 구성 및 상담) ① 구청장은 청소년 근로 권익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구 청소년 노동 인권보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관련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장을 선정 및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1030호, 2019.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③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본조신설 2012. 2. 1.]

[제목개정 2016. 3. 2.]

□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